

## 외국 경쟁당국의 독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동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의 독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동향을 발표하고, 공정위도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이외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경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금전상 제재(financial penalties)의 강화

#### 미국

카르텔이나 독점화를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상한액이 개인 35만불, 법인 1,000만불이며 (셔먼법 제1조, 제2조), 법 위반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는 그 이익의 2배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다(1984년 형양개혁법,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이에 따라 '99. 5. 20. 비타민제조회사들간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있어서 스위스의 호프만 라로쉬사에 대하여 5억 달러(약 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단일기업의 가장 큰 금액이었다(독일의 바스프는 2억2,500만 달러 벌금).

또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배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적정한 변호사 비용과 손해기간의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클레이튼법 제4조)하여 법 위반 기업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 EU

제재금의 상한을 100만 ECU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EU이사회규칙 17호 제15조제2항). 여기서 '직전 사업년도'란 제재금이 부과되는 해의 전년으로 위반 행위가 행하여진 전년도가 아니며, 또한 매출액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분야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 영국

'98년 신경쟁법(Competition Act 1988) 제정에 의거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간의 협정·협조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 기업에 대한 제재금의 상한을 위반행위가 있던 해의 연간 총매출액의 10%로 하고 있다(2000. 3. 1 시행).

## 독일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차별취급 등 행위에 대해 기업의 경우 과징금은 100만 마르크 또는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얻은 수익의 3배까지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경쟁제한금지법 제81조제2항).

## 프랑스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하여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이며, 기업 이외인 경우는 100만 프랑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가격 및 경쟁의 자유에 관한 명령 제17조).

## 일본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거래제한(가격카르텔 등)에 대해 과징금을 대기업의 경우는 위반행위 실행기간(최장 3년간)동안 총매출액의 6%(법정액)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3%, 소매업은 2%, 도매업은 1%이다.

## 면책제도의 확대 실시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경쟁당국의 위반사건 조사시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도 제재조치시 면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미국

'93. 8 회사의 형 면책방침(Corporate Leniency Policy)을 새로이 개정하여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즉, DOJ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에 협력하는 6개 유형(예 : DOJ가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고하였을 경우 등)을 제시하고, 기업의 협력내용이 동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DOJ가 자동적으로 형사면책을 하도록 하여 해당기업이 형사면책을 받게 될 것인가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있다. DOJ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라도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증거불능으로 종결처리 될 가능성이 클 것 등 7개 유형의 협력사례에 대한 면책대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직체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은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노력하는 경우 형의 감면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다.

## EU 및 독일

미국과 같이 독점금지법 운용상 사건조사에의 각종 협력이 면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 영국

영국도 카르텔 등 위법한 협정에의 참가자가 공정거래청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력한 경우, 제재금의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 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a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